

ARS투표用 대표경력 허용기준

26.03.09.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

□ ARS투표用 대표경력 허용기준

대표경력 허용기준(案)

1) 글자 수는 25자 이내만 인정한다.

- 2개 경력 글자 수 합산 기준 (전·현 표기는 합산에서 제외)

2) 전·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허한다.

- ※ 후보자 인지도보다 전·현직 대통령 실명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
(제8회 지방선거·제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적용)

3) 임의적이거나 임시·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.

-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만 허용하고, 존속 1년 미만인 기구 또는 단체의 경력 불허함
-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회적 협동조합, 특수법인 등을 허용하고, 임의단체 중 활동 실적과 규모 등이 국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경력을 인정함

(2024.2.2.(금) 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내용)

비영리법인			
재단법인	사단법인	사회적 협동조합	특수법인(특별법)
설립자 재산 출연액 10억 원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	2인 이상 설립자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	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이 주 사업의 40% 이상	법률 근거 설립
임의단체			
상시구성원 100인 이상, 1년 이상 공약활동 (국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)			

4) 경력 입증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. (해당 기관·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)

-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함 단,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은 경력 인정 단, 직렬 변경에 따라 개별 직함으로서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기관·단체에서의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시 원하는 경력을 사용 가능함
- 급여수급 경력만 인정함
단, 시민단체는 위원장·본부장 등 대표자나 실질 운영자의 경우 급여 수급 없이 활동하는 경우와 위촉직과 같이 한시적, 임의적인 경력이 상존해 기존 기준은 유지한 채 각급 선관위의 판단으로 개별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

5) 특정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, 후원단체, 연구단체, 기념 사업회 등의 영리·비영리단체의 대표 경력은 불허한다.

- 단, 재직증명,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의 포함은 불가함

6)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.

- 청와대·대통령실 근무경력 : ‘대통령비서실 ○○○’ 으로 통일
- 김대중정부, 노무현정부, 문재인정부, 국민의정부, 참여정부, 촛불정부 등 : 불허
- ○○○선대위, ○○○선거대책위원회, ○○○선대본 등 : 불허
- ○○○를사랑하는모임 회장, ○사모 카페 운영자, ○사모 지부장 등 : 불허
- ○○○대통령후보 유세단장, ○○○대통령후보 특보 : 불허
- ○○○시·도지사, ○○○당대표, ○○○국회의원, ○○○장관 정책특보 등 : 불허
- 국회의원 보좌관,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: 허용
-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를 반드시 표기 (제22대 총선 공관위 기준)

7) 소속기관·단체명과 직함(공식적인 직위)은 함께 사용한다.

- (예) 경실련 임원 : 불허 → 경실련 사무처장 등

8) 학력·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한다.

- 정치학 박사 : 불허 → ○○대 정치학 박사 : 허용

9) 출마경력 時 당명,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한다. (※예비후보는 불허)

- 종로구의회 예비후보, 민주당 후보, 19대 국회의원 후보 : 불허
-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,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,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: 허용

10) 당직경력 사용은 허용한다. 단, 특정 정치인 성명 포함은 불허한다.

(제22대 총선 공관위 기준)

- ○○○ 당대표 특별보좌관 : 불허
-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,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: 허용
- 중앙당 및 시·도당에서 경력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(※재직기간 무관)
- 지역위원회 경력 허용 기준 : 당헌·당규에 의거하여 정식 임명된 당직의 공식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시·도당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만 허용

11) 1 ~ 10 외의 허용·불허 기준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